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 제1항 7호 신설,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나.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폐지,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포함)은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은 서울의료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다. 다른 조례 개정(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 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 재단의 운영) 삭제(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제4조 제2항)
 -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제3항)
 -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4항)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 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4. 13.~ 5. 3.) 결과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서재룡(☎2133-923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제3조의3을 제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①”을 삭제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직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의 직원 포함)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7. 그 밖에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p> <p>② (생 략)</p> <p><u>제3조의3</u> (생 략)</p> <p>제13조(과태료) ① (생 략)</p>	<p>제3조(사업)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u></p> <p><u>8. ----- 시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조의2</u> (현행 제3조의3과 같음)</p> <p>제13조(과태료)(현행 제1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의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 서재룡 (02-2133-9235)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재단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조례와 동일하게 명시 요함 제4조(직원에 대한 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모든 직원(정원의 직원 포함)은 의료원의 직원으로 분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직책 등에 관하여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에서 “해고없는 고용 보장 의결” (공기업담당관-30047호2022.12.26.)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2023.2.23.)에 의한 고용보장 사항 시장 방침 - 시입장은 해고없는 고용보장으로 재단 해산 후 직원들을 서울의료원에 고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노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협의할 예정임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	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과 동일한 의견임	위와 동일한 서울시 입장임